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3891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4.

발 의 자 : 송석준 · 안철수 · 김성원  
박성민 · 고동진 · 이현승  
조경태 · 유상범 · 김예지  
김미애 · 성일종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서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는 관련 기업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,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미국,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세액공제 혜택만으로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.

미국의 경우에는 미공제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. 납부세액 부족 또는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

일정 한도 내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44조의2, 제144조의3 신설 등).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2호가목2) 중 “이 조”를 각각 “이 조 및 제144조의2”로 한다.

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4조의2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) 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미공제금액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「국세기본법」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(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,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·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,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

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)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「국세기본법」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144조의3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가 투자완료일 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세액은 「소득세법」 제76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.

⑥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4조의3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) ① 제144조의2에 따

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환급세액은 해당 과세연도 별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(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,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,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)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와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,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등에 관한 적용

례)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은 국가전략기술의 지정 시점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2. 공제금액

가. 기본공제 금액: 해당 과  
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 
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
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 
금액

1) (생 략)

2)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 
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 
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 
이 조에서 “국가전략기술  
사업화시설”이라 한다) 및  
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 
위한 연구·시험용 시설로  
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
시설(이하 이 조에서 “국  
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”  
이라 한다)에 2029년 12월  
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[3]  
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
한다]

3)·4) (생 략)

나. (생 략)

3. (생 략)

② ~ ⑤ (생 략)

<신 설>

2. -----

가.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1) (현행과 같음)

2) -----

-----

-----

이 조 및 제144조의2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이 조 및 제144조의2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.

3)·4) (현행과 같음)

나.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44조의2(국가전략기술사업화

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 
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)

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 
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 
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 
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 
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  
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 
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  
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  
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 
이 조에서 “미공제금액”이라  
한다)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 
환급세액으로 보아 「국세기본  
법」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  
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 
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인의  
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 
인세(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  
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  
한 법인세, 제100조의32에 따른  
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 
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 
법인세,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  
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

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 
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  
를 말한다)의 100분의 20을 한  
도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 
대해서는 「국세기본법」 제52  
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 
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  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 
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  
청을 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 
환급받은 자 또는 제144조의3  
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  
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가  
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  
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 
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  
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  
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  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 
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  
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  
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 
세액은 「소득세법」 제76조

<신 설>

또는 「법인세법」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.

⑥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4조의3(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) ① 제1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환급세액은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(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에 따

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,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,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)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와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,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.